

# 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지구(국가시범지구) 지정(안)

## 의견청취안

의안 번호	292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10월 15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### 1. 제안이유

- 가.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41조 및 제56조에 따라 「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지구(국가시범지구) 지정(안)」을 마련하여 주민과 관계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,
- 나. 「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지구(국가시범지구) 지정(안)」에 대하여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함.

### 2. 주요내용

#### 가. 혁신지구 지정(안)

- 위치 : 강서구 공항동 1373 일원
- 면적 : 354,567㎡ ※ 김포공항 전체면적 844만㎡ 중 35만㎡(4%)
- 규모 : 지하 4층/지상 8층, 연면적 1,192,524㎡ 복합시설
- 용도 : 복합환승시설(S-BRT, UAM), 상업·업무시설, 문화및집회시설(MICE), 모빌리티·혁신산업/지식산업센터, 오피스텔 등
- 내용 : 김포공항 및 주변지역을 서남권 도시재생·신경제거점으로 조성하여 공항과 지역 간에 연계 강화 및 혁신산업 도입으로 일자리 창출,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활환경개선 도모
- 사업기간 : 2021. 9. ~ 2027. 12.
- 사업비 : 총 2조9,640억원 (국비 40, 시비 60, 공공기관 490, 민간 29,050)

## 나. 의견청취 내용

- 혁신지구 지정목적 및 면적, 사업시행기간
- 주요 도입기능 및 토지이용계획
- 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에 관한 계획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사항 등

## 3. 추진경위

- 한국공항공사 사업제안 및 국가시범 혁신지구 업무협약 : 2020. 10.
- 김포공항 국가시범지구 사업계획(안) 제출 (한국공항공사) : 2021. 9. 13.
- 주민과 관계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: 2021. 9. 29.
- 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지구 평가 신청 (서울시→국토부) : 2021. 9. 30.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41조, 제56조 및 제33조

나. 예산조치 : 도시재생 혁신지구(국가시범지구) 지정 이후 국·시비 분담비율(4:6)에 따라 예산 별도 책정 검토 필요하다.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의견청취사항

※ 작성자 : 균형발전정책과 균형발전전략팀 김태현 (☎ 2133-8622)

〈 위치도 〉



〈 전경사진 〉



**붙임2**    **혁신지구 기본구상 및 도입시설**

〈 기본구상 〉

- 공항기능과 더불어 국제업무, 전시·컨벤션기능 및 지역에 필요한 문화·체육기능, 혁신산업, 상업, 생활SOC, 창고 시설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입체적 공간 조성
- 기존에 위치한 김포공항역을 중심으로 S-BRT, UAM 등 다양한 교통수단의 환승이 가능한 허브 구상
- 인근지역 주민 및 공항이용객, 종사자의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, 안전성을 고려한 보행 동선



〈 도입시설 〉

기능	세부 내용	비고
복합환승시설	· 항공·철도(지하철), 대중교통(택시, 버스, 광역버스) · UAM 이·착륙장 등 통합 모빌리티 복합환승시설	-
컨벤션·공공·업무·상업	· 국제업무 지원을 위한 전시·컨벤션 센터 및 관련 상업시설, UAM 도입	-
체험·전시·숙박	· 호텔, 공연장·스포츠 콤플렉스 및 박물관과 연계한 VR 체험시설 등	-
업무·교육	· 글로벌기업 오피스, 공항 부대시설, 항공 업무 지원시설, 창고시설 등 (항공사 오피스, 글로벌 항공 교육 등)	-
산업·상업	· 마곡지구 등과 연계한 첨단 산업, 연구 R&D 시설 등 ·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, 소규모 오피스 지원 · 공항 관련 업무 종사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, 창고시설 등	-

<b>붙임3</b>	<b>혁신지구 계획(안)</b>
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

구분	세부 내용	비고	
위치	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1373 일원	-	
구역면적	354,567.00㎡	-	
용도지역·지구	자연녹지지역, 생산녹지지역,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개발제한구역	-	
실사용 대지면적	300,110.00㎡	-	
용도	복합시설 (환승시설, 업무·산업시설, 상업시설, 문화·체육시설, 생활SOC, 공공시설 등)	-	
규모	지하 4층 ~ 지상 8층	-	
구조	철근콘크리트구조, 철골구조	-	
연면적	계	1,192,524.14㎡	-
	지상	518,664.46㎡	
	지하	673,859.68㎡	
건축면적	165,650.56㎡	-	

